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& Health Services

WASHINGTON BASIC FOOD PROGRAM

수혜자격 해지 동의서

DISQUALIFICATION CONSENT AGREEMENT

카운티	수혜자의 이름	소셜시큐리티 번호	생년월일	수혜자 ID 번호

주소	시	주	우편번호	DFI 번호

본인 _____은(는) 다음을 인지합니다.
이름, 중간이름, 성

1. 본인은 본 수혜자격 해지 동의서에 서명합니다.

2. 본인은 허위진술이나 사기 행위로 민/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본인이 이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본인은 본인의 기본식품 혜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. 본인의 수혜자격이 해지되는 시점에서 본인의 어시스턴스 유닛(assistance unit)은 감소된 식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본인이 이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본인은 본인의 수혜자격이 다음과 같이 중단됨을 이해합니다.

   ☐ 육(6)개월 ☐ 12 개월 ☐ 24 개월 ☐ 십(10)년 ☐ 영구적으로

   해당 사항: ☐ 초범; ☐ 재범; ☐ 세 번째 위반; **혹은**

   ☐ 본인은 다른 기관(들) 혹은 주정부(들)로부터 기본식품을 이중으로 받았습니다.

4. 본인의 기본식품 어시스턴스 유닛(assistance unit)에 속한 모든 성인들과 본인은 초과 지급된 기본식품을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.

5. ☐ **본인은 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.**

기본식품(BASIC FOOD) 프로그램 벌칙 경고

WAC 388-446-0020에 따라 해당 수혜자는 다음과 같이 기본식품 수혜를 금지한다.

6개월 금지 – 초범으로 어시스턴스 유닛이 다음과 같은 벌칙을 통지 받기 전에 위반행위를 끝냈을 경우

1년 금지 – 기본식품(Basic Food)/푸드스탬프(Food Stamp) 프로그램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

2년 금지 – 동일한 범죄의 재범 혹은 규제약물을 위해 기본식품(Basic Food)/푸드스탬프(Food Stamp) 혜택을 구매, 판매 혹은 교환한 결과로 첫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

10년 금지 – 혜택을 이중으로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분을 위조하거나 거주지 정보를 허위 진술할 경우

평생 금지 – 기본식품(Basic Food)/푸드스탬프(Food Stamp) 혜택 규정을 고의적으로 3번 위반한 경우, 규제약물을 위해 기본식품(Basic Food)/푸드스탬프(Food Stamp) 혜택을 구매/판매/교환하여 유죄판결을 2번째 받은 경우, 총기, 탄약, 폭발물을 위해 기본식품(Basic Food)/푸드스탬프(Food Stamp) 혜택을 구매/판매/교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혹은 500달러어치 이상의 식품혜택을 구매/판매/교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

고의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기소는 물론, 250,000달러까지 벌금형을 받거나 20년까지 감옥에 구치될 수 있으며 혹은 벌금형과 함께 구치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타 연방법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.

수혜자격 상실자의 서명	서명날짜

DISTRIBUTION: ☐ Community Services Office ☐ Home and Community Services ☐ Office of Financial Recovery ☐ Prosecuting Attorney ☐ Division of Fraud Investigation ☐ Client